TV 법정 프로그램에 나타난 법 이미지와 현실구성

<실화극장—죄와 벌>을 중심으로*

이희은**

이 논문은 법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구성하는 현실과 법이미지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문화나 법규범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방송 언어로 재현될 때는, 정보 제공 기능과 오락 기능은 물론 현실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재연의 형식으로 되돌아보는 <실화극장—죄와 벌>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현실의 사건을 재현하여 수용자들에게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고,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기법을 혼합하여 법체계 및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이때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은 현실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의미를 구성한다. <실화극장—죄와 벌>의 경우, 법의 권위를 강화한다는 소위 'CSI 효과'보다는 대립 구조로 사회를 파악하고 개인과 법의 관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TV 법정 프로그램은 법체계를 교육하는 상징체계의 역할뿐 아니라 현실의 법과 사회구조와 가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기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법정 프로그램, 법 이미지, 리얼리티 프로그램, 현실구성, CSI 효과, 미디어와 법

1. 문제 제기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한 사회의 법 체제 앞에서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사형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개봉되면서 힘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형제 폐지론은, 강력사건이 미디어에 보도될 때마다 그만큼 더 강력한 사형제 폐지 반대론의 목소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이러한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일상 속의 미디어와 법이 여러 층위에서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으며, 법적인 쟁점이나 법규범에 대해 미디어가 구성하는 의미가 실제 현실의 구조와 문화를 판단하는 데에도 준거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미디어와 법 사이의 소통은 간헐적이며 불평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도였다. 앞의 <PD수첩>의 기소 사례가 말해주듯 법은 미디어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고 의미구성에 간섭해왔던 반면, 미디어는 법을 다루는 데 있어 극히 제한적이거나 관습적이었다. 학문적으로도 이러한 상호 오해와 불평등한 관계는 마찬가지였다. 법학에서는 법률을 사회적 관계의 시스템으로 보기보다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엘리트적인 관점에서 미디어를 정의하여 대중문화를 신뢰성 없는 공간으로 본다. 언론학에서도 미디어의 폭력 재현에 관한 효과 연구를 제외하면 법과 법 이미지 전반에 대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7- 321-B00164)이며, 2008년 5월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이희은, 이화진 공저)을 대폭 수정하여 작성되었음.

**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helee@chosun.ac.kr)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사회와 거리를 두는 독립적 체제로서 법을 이해하는 법학적 관점을 언론학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법규범이나 법제도는 물론 법조인이나 법기구가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폐쇄성 때문에, 미디어가 법문화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미디어는 법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적극적으로 포섭한다. 대중오락과 교육과 정보의 접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후 법정 드라마와 범죄 드라마가 꾸준히 이어져온 미국의 경우, 법은 유용한 방송의 소재가 되었다.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O.J. Simpson)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재판 과정을 액션물이나 스릴러처럼 다루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때 기자들은 마치 스포츠 중계라도 하듯 보도하며, 각종 코미디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수용자들은 관음적인 오락처럼 재판과정을 즐기게 된다. 결국 폐쇄적인 법 체제 내의 고유문화를 일컫던 '법문화'라는 말은 이제 한 사회 내에서 대중들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나 가치 및 의견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법 체제, 법정, 정의, 경찰, 법관 등에 대한 이미지나 태도가 포함되며, 텔레비전과 영화 등 영상미디어는 이러한 이미지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논문은 텔레비전의 법 재현이 법체제와 법문화 등 법에 대한 이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적이고 오락적인 요소가 법적 정보의 전달이나 법이미지의 구축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적 집행과 판결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는 법정 프로그램이 분석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갈등과 대립이라는 오락적인 요소와 토론과 논쟁이라는 정보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MBC에서 방송되었던 <실화극장—죄와 벌>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법 이미지 구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부상하기 이전까지, 오랜 동안 미디어에서 법이 재현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였다. 우선 사실 보도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이나 법집행 등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수사물이나 스릴러 등 픽션을 통해 재현되는 경우로, 주로 긴장감을 자아내는 범죄 행위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만한 선정적인 소재가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대중매체는 갈등과 대립구조에서 일어나는 드라마를 사랑한다. 이는 법도 마찬가지다.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그 기본 정의에는 갈등과 대립이 깔려 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권위를 갖고 누가 부도덕한지를 가리는 극적 구조는 미디어와 법이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지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은 실제 집행되는 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실 세계의 법규범과 법문화는 지극히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엄밀한 논리를 요하는 장기간의 과정이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법은 스릴 넘치고 의외성이 많은 세계로 묘사되곤 한다. 현실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의 이미지가 실제 법 구조나 절차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적인 내용들은 일반 수용자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법문화를 엿볼 수 있는 창이나 렌즈의 역할을 한다. 특히 드라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텍스트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법문화를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사 현실로

만들어준다. 전문적인 법의 영역이 대중문화와 교차하는 지점인 셈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중매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관습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만, 특정 사회의 현실적인 제약조건이나 사회적인 구조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법을 왜곡한다거나, 재현된 법이 수용자에게 일방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법과 미디어를 각각 독립적인 권위를 누리는 체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상호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텔레비전은 친숙함과 낯섦 사이의 적정 지점을 찾아내어 수용자에게 소구한다. 이 때문에 텔레비전이 법이나 과학, 의학 등 전문적이고 낯선 영역을 소재로 삼는 일이 점차 잦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오락이나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현실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방송용으로 창작되고 재구성된 내용임이 분명한데도, 내용이나 소재의 전문성 때문에 지극히 사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정 프로그램이 갖는 독자적인 장르로서의 의미에 대한 인식도 낮고 그에 대한 학문적 접근 역시 미흡한 상태이다. 실제 사건의 법적 진행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실화극장－죄와 벌>의 분석을 통해, 미디어 연구와 법의 접점을 탐구하고 법 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어 그 권위를 구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1) 미디어 연구와 법

미디어와 법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지식이나 판단의 근거로 기댈 수 있는 권위를 지닌다는 점이다. 더구나 미디어와 법이 결합할 때 그 권위와 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힘을 잘 표현하는 말로 최근에는 'CSI 효과(CSI effect)' 혹은 'CSI 신드롬(CSI syndrome)'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Hughes & Magers, 2007; Tyler, 2006). 이는 TV 드라마인 <CSI(과학수사대)>의 내용을 준거로 삼아 실제 법률적 과정이나 집행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현상을 말하며, 드라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내용이 현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현상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 언론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던 'CSI 효과'라는 말은 일반 수용자, TV 프로그램 생산자, 법조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수용자들은 피고가 유죄임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검사들이 완벽하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무죄 평결을 내려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포들라스(Podlas, 2006)의 연구에 따르면, <CSI>를 시청한 시민 배심원들은 형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인식하며 이로 인해 실제 무죄 판결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프로그램 제작자는 수용자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실성을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수나 조언에 더 많이 기대게 되고, 법전문인들도 법집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법 이미지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로앤오더(Law & Order)> 등 다른 법률 드라마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대표적으로 Schweitzer & Saks, 2007). 또한 CSI 효과의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예를 들어 Cole & Dioso-Villa, 2007; Tyler, 2006).

이처럼 미국의 언론학은 법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온 편이다(대표적으로 Carlson, 1985; Rapping, 2003; Zoonen, 2005). '형사범죄 드라마(criminal drama)'와 '법정 드라마(legal drama)'가 장르로서의 틀을 견고하게 갖춘 데다 시청률도 좋기 때문이다. 이 연구들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흐름은 커뮤니케이션 효과연구의 전통을 바탕으로, 텔레비전에서 범죄나 사건을 시청하는 행위가 현실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전통이 오래된 것으로, 미국 TV의 법정 드라마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장수해왔던 탓에 실증 연구결과도 풍부한 편이다. 거브너(Gerbner, 1976)의 배양효과 이론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범죄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현실을 실제보다 더 무서운 세계로 인식하게 된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거브너의 연구는 이후 많은 TV 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나 지나치게 단순한 인과 관계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컨대 범죄 드라마 시청이 오히려 사건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대중적인 TV 드라마의 특성상 매회 마지막에는 결국 그 사건이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결론의 방향은 다르지만, 효과연구의 전통을 따르는 연구들은 법정 드라마나 범죄 드라마가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쳐 결국 법체계나 법집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

두 번째 흐름은 범죄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의 영향력이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이 조작되거나 과장될 경우의 문화적 의미를 다룬 연구들이다. 인종이나 젠더 표현의 스테레오타입을 다룬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엔트만(Entman, 1992)은 범죄 장면에 자주 등장하는 '젊은 흑인 남성'이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자로 인식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이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 범죄자로 묘사될 확률이 더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 재현방식 자체에도 스테레오타입이 개입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엔트만의 분석에 따르면 흑인 범죄자는 백인 범죄자에 비해 더 수동적이고 가난하게 묘사되며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경우도 더 많다. 개인성보다는 특정한 인종에 대한 집단 정체성으로 범죄자를 의미하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 결국 TV는 현대 일상의 인종주의를 생산한다고 엔트만은 비판한다. 이 외에도 <로앤오더>에 표현된 젠더와 인종의 정체성을 분석하여, 이 드라마가 나와 타자의 구분을 통해 무엇이 그 사회의 정의인지 규정한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Eschholz, Mallard & Flynn, 2004).

세 번째로 넓은 의미에서 법체계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의 흐름이 있다. '법', '진실', '정의' 등 사회 문화적인 가치와 체계가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정의되며 표현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텔레비전 뉴스를 다룬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올리버(Oliver, 1994)의 연구처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표현되는 현실의 가치에 관심을 두기도 한다. 특이할 만한 것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뉴스의 표현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는 뉴스와 오락, 논픽션과 픽션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Manning, 1996). 이를테면 <NYPD 블루(NYPD Blue)>는 핸드헬드 카메라로 흔들어 찍는 방식을 사용하여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는 역할을 한다. 로버스(Robbers, 2005)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볼링포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이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이데올로기적

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험으로 설명한다. 영화를 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총기규제에 대해 더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로버스는 범죄와 법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에 미디어가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결론 맺는다. 결국 드라마이면서도 현실성을 도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법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재구성되고 재생산되며 이는 다시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납득할만한 가치로 수용되고 학습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의 연구 사례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법체제의 맥락도 다르고 법문화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디어가 'CSI 효과'라 불리는 현실인식의 거울을 제공한다면, <실화극장—죄와 벌>처럼 현실을 각색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암묵적인 관습이 수용자들의 법 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어떤 것일까? 미국의 <CSI>가 범죄와 수사과정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특성을 가진 반면, 한국의 <실화극장—죄와 벌>은 드라마적인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따라서 미디어에 나타난 법의 재현이 단순히 미디어의 막대한 힘이나 시각적 자극 때문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특정 문화권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법체계나 법문화의 이미지가 미디어의 법적 재현을 구성하거나 제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기회가 더 많고 미디어와 법의 공생 관계의 역사가 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일반시민에게 훨씬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 역시 법정 드라마의 의미에 큰 차이를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에서는 흩어져 있던 지방권력을 연방정부로 모아주는 데 법정 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Friedman, 1993). 각 주의 범죄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의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법정 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범죄 드라마나 수사극이 국책성 프로그램으로 장려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극적 표현과 국민의 건설적 기풍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1)]

미디어에 나타난 법의 의미는 이처럼 특정 사회나 문화가 법과 맺는 관계를 고려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Sarat & Kearns, 1995). 첫째는 도구적 관점으로, 법을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체계로 인식하여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규제 등에 관심을 두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구성적 관점으로, 법이 사회 안에서 작용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구성원들의 지식이나 이해를 구성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일반 대중들이 법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은 탓에 대중매체의 법 재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은 전자, 즉 도구적 관점에 따른 해석이다(Gies, 2006).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현상을 미디어로 경험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판단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거브너의 배양효과 이론과 비슷한 전제를 갖고 있다. 강력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이러한 도구적 관점의 대표적인 사례다. 부모를 살해한 흉악범이 영화 <공공의 적>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단정하는 언론 보도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구성적 관점에서는, 법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라 여긴다. 따라서 대중들이 매체를 통해 얻는 구체적 지식보다는 법에 대한 관념이나 의식 혹은 이미지에 더 주목한다.

법이라는 영역은 그 전문성과 폐쇄성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야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일상생활로 침투하고 그 안에서 법과 미디어가 상호작용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도구적 관점보다는 구성적 관점에서 미디어와 법의

1) '반공물 및 수사물 텔레비전 방송드라마 내용순화에 관한 권고결정'(<방송윤리>, 1978년 2월 3일) 등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관계를 이해하는 일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한 사회 내의 법과 미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TV 텍스트로 재현된 법

뉴스가 아니면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법조인들이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에까지 등장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는 법이 미디어와 별개의 영역이 아님을 법조계 내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며, 수용자 역시 법이라는 전문 영역에 대한 관심을 일상생활 속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요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법과 텔레비전과의 관계를 텍스트의 측면에서 보자면,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텔레비전이 주체가 되어 법체계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룰 <실화극장—죄와 벌>을 비롯하여, <변호사들> 등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교양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관계는 신선한 소재로 수용자에게 소구해야 하는 미디어의 필요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인데,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 실제와 다르게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심지어는 법을 오락거리로 만들어서 그 권위를 부정했다거나 하는 등의 비판이 자주 일어난다. 이는 장르적인 관습에 치중하는 미디어의 제작과 엄격한 법조문 및 판례의 적용이라는 법의 실행이 충돌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체계가 주체가 되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웹진에 '미디어 속에 나타난 검찰'이라는 연재물이 실린다거나, 검찰방송 홈페이지에서 다큐멘터리와 뉴스에 나타난 검찰의 모습을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여기에 속한다. 검찰방송에서는 영화 내용을 토대로 생활 법률을 설명하며, 아예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동명의 방송을 다시 시청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대중매체가 지닌 광범위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법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나 저항이 덜한 편이다.

이처럼 법과 미디어의 관계가 아직까지 상호공생이라기보다는 상호이용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까닭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법에 대한 엘리트주의적인 관점과 미디어의 힘에 대한 도구적인 관점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은 조금의 잘못된 재현이나 즐거움마저도 허락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시각과, 분별력 없는 수용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사회구조와 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문화 사이에서는 이러한 법의 재현이 특정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예컨대 빌레즈(Villez, 2009)는 프랑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법정 드라마들이 프랑스인들의 법 이미지를 바꾸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프랑스의 법정이 아니라 미국식의 법정 풍경(예를 들어 1인 법관, 배심원 자리의 위치 등)을 더 많이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되는 법이미지에 비해 대중매체가 구성하는 법이미지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거나 오히려 크기까지 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비대칭적이던 법과 미디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미디어가 법을 소재로 활용하는 만큼이나 법 역시 미디어를 홍보와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능케 한 데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등장이라는 맥락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실화극장—죄와 벌>의 경우, 내용과

형식에서 정보와 오락이 섞여있을 뿐 아니라 설득 방식에 있어서도 공포와 즐거움을 동시에 사용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의미로서의 유사 리얼리티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구성물인 미디어를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변화의 시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종수(2004)의 지적처럼, 텔레비전 이미지가 물리적으로 현실의 조건이 될 수 없고 현실과 가상현실이 혼동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텔레비전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법이나 정치 등 진지하게 여겨졌던 분야가 오락과 결합될 때, TV는 더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TV가 정보나 이성적인 대화보다는 오락에 최적화된 매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포스트만(Postman, 1985)은 미디어의 오락화 자체보다는, 오락적인 특성이 정치 등 공적 담론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는 현상을 크게 비판한다. 그는 오락의 형태로 제공되는 공적 담론들이야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인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디어가 모든 대상을 상품화해버리는 현실 속에서도 법과 정치는 그 고유의 성격과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이나 정치 등의 공적 담론을 미디어의 오락화 현상에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얻은 법조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사회고발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은 법적 쟁점을 이슈화시키는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넨(Zoonen, 2005)은 미디어와 법의 관계를 법 체제의 사회문화적인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법을 다룬 오락 프로그램의 리얼리티 문제보다는, 이러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타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선택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황우석 사태 때 일부 시민들이 자신의 지식을 맹신하며 언론 플레이를 벌이거나 사안의 일부만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갑론을박을 벌이는 일 등이 그러한 사례다. '스템셀'이나 '배아복제'라는 전문 용어가 그토록 대중적인 지식으로 확장된 사례가 있었던가? 마찬가지로 <실화극장—죄와 벌>의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정교한 법률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피력하는 시청자의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오락의 형태로 제공된 정보를 사실이나 진실로 이해하게 되는 까닭은, 그 내용을 정말 믿어서라기보다는 텔레비전이 만들어내는 리얼리티의 관습에 익숙해진 수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리얼하다고 지각한 때문이다. 즉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표방하는 리얼리즘은 객관적인 사실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종수(2004)는 니콜스(Nichols, 1991)의 개념을 빌려, 픽션의 리얼리티가 실제 같음(핍진성, versimilitude)에 기반한다면 논픽션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는 실제 세계의 진짜 이야기라는 진정성(authenticity)을 강조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논픽션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는, 방송된 내용이 실제 사회와 지표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관습적 장치가 필요하다.[2] <실화극장—죄와 벌>의 경우도, 드라마 재연과 함께 여러 가지 관습적 장치들을 사용한다. 실제

2) 큰 인기를 끌었던 <경찰청 사람들>(MBC)에서 경찰이 사건을 서술하는 장면을 어색하게 처리한 것이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KBS)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대사도 이처럼 실제 현실과의 관계를 일깨우는 장치로 작용한다.

사건을 소재로 삼았음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삽입하고, 제3자의 내레이션을 깔고, 실제 변호사의 인터뷰를 포함시키는 것 등이 그러한 사례다.

물론 이러한 리얼리티 구성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영상 매체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포스트만(1985)도 지적했듯이, 객관성과 거리감을 전제한 인쇄문화 시기에는 지식과 이성에 근거하여 토론하는 일이 가능했다. 반면 텔레비전은 단절된 시청패턴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논리적 연결성 보다는 파편적 정보 제공에 기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텔레비전은 모든 현실과 경험들을 재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재현된 현실과 경험들은 모두 파편적이고 순간적이며 즉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정치나 법 등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조차도 광고나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유명인의 인기와 신뢰성에 기대게 되며, 퀴즈나 추리 등 친숙한 방식의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중적인 텔레비전의 관습이 어떤 방식으로 법이라는 전문 영역을 재현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된다. 특히 판례로 기록된 문자 텍스트를 영상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재구성과 생략이 일어나는지, 법적인 전문용어나 쉽지 않은 법조항들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풀어내는지, 이미 완결된 사건에 어떻게 유사 현실성을 가미하여 오락성을 증가시키는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이지만 과거에 완료된 사건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는지, 그 재해석은 과연 법적으로 옳은 지식을 전달하는지, 법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법정 리얼리티 프로그램 <실화극장－죄와벌>

수사극이나 드라마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법정 TV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의 사례로는 일종의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SBS, 2002년～2009년 9월)[3], 재연 드라마로 사건을 구성하고 법정 조정 상황 재연을 덧붙이는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KBS, 2000년～2009년 4월), 그리고 재연 드라마와 미스터리 다큐가 혼합된 형식을 보여주는 <실화극장－죄와 벌>(MBC, 2003년～2005년) 등이 있다. 이 중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을 소재로 택한다는 점과 법정 공방의 과정을 가장 자세히 보여준다는 이유에서, <실화극장－죄와 벌>을 법이미지 분석의 연구대상으로 선택했다.

<실화극장－죄와 벌>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MBC에서 매주 방송되었으며, 월요일 혹은 화요일 늦은 밤이라는 편성시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마니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프로그램이다.[4] MBC에서 종영된 이후에도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데, 여전히 MBC 홈페이지에는 <실화극장－죄와 벌>을 다시 방송할 수 없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3) 2008년 4월 이후에는 <TV로펌－솔로몬>으로 프로그램명과 포맷을 일부 개편하여 방송되었다.

4) 방송 시작부터 2004년까지는 월요일 저녁 11시 55분에,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화요일 저녁 12시 55분에 방송되었다.

있었던 민·형사 재판을 드라마로 재연하는 일종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자료나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드라마로 재연하고 가상의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극적 구성을 중시 여기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평범한 사건보다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사건, 그리고 해결된 사건보다는 미제로 남아있거나 뜻밖의 반전을 겪었던 사건들이 주로 소재가 된다.[5]

<실화극장—죄와 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도 잘 짜인 영화와 같은 긴장감을 준다는 데 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미 과거에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받아들이고 극에 몰입한다. 종영한 지 몇 년이 지난 이 프로그램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데에도 이러한 현재성이라는 특징이 크게 작용했다. 시의성이나 시청률만 가지고 보자면 <실화극장—죄와 벌>은 <변호사들> 등과 같은 법정 드라마의 인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재연 드라마와 법적 공방 과정이 혼합된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이후 텔레비전에서 법집행 과정이 재현될 때마다 반복되는 관습이 되었다. 2010년 2월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죄와 길' 에피소드는 그 좋은 사례다. '죄와 길'이라는 제목은 물론이고, 법정 장면의 세트 구성이나 논증과 재연을 번갈아보여주는 편집 기법 역시 <실화극장—죄와 벌>을 패러디했다. 그만큼 미디어의 법 이미지 재현에서 <실화극장—죄와 벌>의 형식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드라마와는 달리 실제 사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내용면으로도 <실화극장—죄와 벌>은 현재진행형이다. 비슷한 사건이나 법적 공방이 있을 때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인용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수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다룬 8회 방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에피소드의 방송 이후 사건과 판결에 대한 시청자들의 논쟁이 너무나 격렬해진 나머지, 이미 종료된 판결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의 다시보기 기능이 중단될 정도였다. 그만큼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했다는 의미이다.[6]

2) 분석 방법

<실화극장—죄와 벌>을 통해 구성되는 법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의 TV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텍스트 분석 방법은 크게 해석적 분석(기호학적, 수사학적, 이데올로기적 분석)과 내용 분석(양적인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틀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법이라는 권위적인 제도를 미디어와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5) 제작진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방향을 일컬어, "딱딱한 재판기록문구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과 주장을 담아내는 휴먼법정 프로그램"이라 지칭하며, "법이 과연 인간의 진실을 어디까지 판가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다양한 인간상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인용. (http://www.imbc.com/broad/tv/culture/law/proinfo/index.html)

6) 이러한 측면에서 <실화극장—죄와 벌>은 자료와 증언을 통해 현재의 사건에 접근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류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와도 다르다. 대부분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사건들에 접근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는 반면, <실화극장—죄와 벌>에서 다루는 내용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실제 법정에서는 다시 다룰 수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트먼(Chatman, 1978)이 지적했다시피, 모든 서사는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으로 나뉠 수 있다. 이야기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담론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과 그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언어와 영상이 표현되는 방식과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담론을 이해할 수 있다. 채트먼의 분석은 원래 영화나 드라마 등 픽션에 적용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서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수정(2008)의 영어열풍교육에 대한 텔레비전 담론 연구, 최현주(2006)의 다큐멘터리 서사구조 비교연구, 민병현(2009)의 시사프로그램 의미구조분석연구 등이 모두 <PD수첩>이나 <추적 60분>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서사분석도 적지 않다(예를 들어 이경숙, 2006; 홍지아, 2009). 그러나 이 연구들이 기반하고 있는 서사연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되고 구성되는 특정 담론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법의 특정 내용보다는 법 체제나 법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구성에 집중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서사의 인과적 결합(통합체)이나 기능적인 대비(계열체)에 대한 분석이 특정담론을 이해하게 해주는 데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법제도나 기구에 대한 이미지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렌(Allen, 1987/1992)이 제시한 담론 분석틀을 참고하되, 장르 코드, 문체 코드, 개별 텍스트 코드, 상호텍스트 코드 등을 기준으로 이야기 내러티브와 전체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 알렌은 현대 텔레비전 비평은 내용분석 자체보다는 시청자의 텍스트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텔레비전 텍스트가 위치하는 사회적 구조와 그 안에서의 시청자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실화극장—죄와 벌>은 법이라는 사회 구조에 구체적으로 기대고 있는 텍스트임을 고려하여, 내러티브의 전개 자체보다는 법적 권위나 이미지가 구성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서 법적 내용을 다루는 방식과 실제 현실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쟁점, 주제, 줄거리와 시퀀스, 등장인물, 이항대립 구조, 드라마적 요소와 정보적 요소의 배치, 구성과 편집 특성, 대사와 사운드, 카메라 영상, 기타 특이할 만한 점들과 법률적인 쟁점의 항목에 따라 분석했다. 우선 무작위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골라 연구원들이 함께 분석한 후, 일부 사항은 수정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분석 항목을 결정하였다.[7)]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는 MBC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기능을 이용하였다. 42회 이전까지는 한 사건당 1회 방송되어, 한 회 분량 안에서 사건이 완결되었다. 그러나 42회 이후부터는 하나의 사건을 2회로 나누어 방송하는 형식이 주를 이룬다. 다시보기가 가능한 7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총 98개의 방송분 중에서, 사건의 유형이 겹치거나 법적인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그리고 한 회에 두 개의 에피소드를 방송했던 사례는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총 52개의 에피소드(74회분)가 최종 선택되었다(<부록> 참조).

7) 1차 텍스트 분석에는 연구자 외에도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의 홍승희와 권경휘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법적 쟁점이나 주제 등이 유의미하게 다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법적 내용들이 중복되는 에피소드들을 제외하여 유목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실화극장－죄와 벌>의 분석 결과 및 논의

1) 내러티브의 구성과 특징

<실화극장－죄와 벌>은 사건에 따라 구성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재연 드라마의 형식을 지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 이러한 형식은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밝힌 바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42회 이후 한 사건을 2회로 나누어 방송하면서부터, 미스터리 효과 등 극적인 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보였다.

가장 많이 다루어진 내용은 폭행치사 및 살인으로 모두 13건이었다(19회, 25회, 34회, 35회, 44회, 45-46회, 47-48회, 51-52회, 53-54회, 55-56회, 61-62회, 65-66회, 69-70회). 뒤를 이어 성희롱과 강간이 5건(19회, 20회, 36회, 38회, 42-43회), 증인의 진술에 대한 효력문제가 3건(7회, 21회, 75-76회), 양육권이 2건(39회, 49-50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명예훼손(17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22-23회), 방화(27회), 강도(31회), 사문서 위조(57-58회), 비과학적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79-80회), 의료사고(12회), 절도(23-24회), 간통(26회), 잘못된 수사로 인한 인권 문제(40회)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폭행치사 및 살인이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실제로 살인 사건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극적인 소재를 주로 선정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내러티브 전개에서 미스터리와 수사극의 형식을 접목하고 있는데, 각 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건의 발생→범인 지목→엇갈리는 진술과 수사과정→갈등 고조→법적 판결→마무리→후일담'의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즉 사건의 원인과 범인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일반적인 추리극과는 달리, <실화극장－죄와 벌>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백히 드러낸 채 이야기를 시작한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어느 한 편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기가 쉽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잔인한 장면이 묘사되거나 할 경우 몹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일부 에피소드는 제목에서부터 자극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메이퀸 여대생 호텔 살인사건'(28회), '죽음의 포즈－누드모델 살인사건'(37회) 등 굳이 내용과 큰 관계없는 피해자의 신분을 제목으로 내세운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극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실화극장－죄와 벌>은 '외연적 주제'와 '내포적 주제'를 공존시킨다. 각 에피소드의 제목과 구성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외연적 주제라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건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수용자에게 암시적으로 던져지는 주제를 내포적 주제라 할 수 있다. 외연적 주제는 법적 쟁점에 해당하므로 옳고 그름의 이분법에 따라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내포적 주제는 시청자의 관점이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컸다. 특히 법집행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개인의 인권 문제, 또는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법체제의 허점 등이 내포적 주제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여대생 피살사건을 다룬 17회 방송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중요한 내포적 주제를 형성했다. 32회 방송의 경우에도 외연적 주제는 강도 살인 사건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강압적 수사방법을 비판하는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대부분의 이야기는 결론을 유보한 채 열린 구조로 맺어지는데, 이러한 마무리 방식은 결국 법적인 결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법을 앞세운 공권력의 권위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의 의미에 의문을 품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등장인물

매주 다른 사건을 다루는 <실화극장－죄와 벌>의 연속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는 출연 배우이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배우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권력을 대표하는 변호사(이성용), 검사(선우재덕, 정욱, 신은정), 판사(김원배), 형사(양승걸) 등은 비교적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고정 역할을 맡는다. 반면 실제 인물들을 재연하는 배우들은 매회 달라지며, 이들은 얼굴이 덜 알려진 배우인 경우가 많다. 간혹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인물들(당시 피해자, 증인, 담당 변호사 등)이 직접 등장하기도 한다. 이때 변호사는 자막으로 이름을 소개하며 정식 인터뷰로 처리하는 반면에 피해자나 증인들은 모자이크나 목소리 변조 등으로 처리한다. 한편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우의 내레이션을 들 수 있다. 중년 남성의 낮은 목소리로 깔리는 내레이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서적인 판단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고정배역과 임시배역과 실제인물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 프로그램의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조인과 형사 역할을 담당하는 배우들은 반복해서 출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쌓는다. 이는 드라마 내부적으로는 유기적인 인물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픽션일 뿐이라는 허구성을 드러내준다. 반면 재연배우들은 조금 어색한 연기로 더 현실적이고 평범한 인물을 표현하며 현실성을 추구한다. 이들 재연 배우의 연기에 따라 극의 분위기와 주제 전개 방식은 사뭇 달라졌고, 이는 열린 결말이라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상 극의 전체적인 주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예컨대 '연변 여자－중국교포 절도사건'(87-88회)의 경우, 극중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연변 여성 역의 배우가 매우 애틋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이 여성이 사실은 죄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안개속의 살인범－화성연쇄 살인사건'(19회)에서도 선한 이미지의 배우가 용의자 역할을 맡았는데, 용의자 구속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된다는 결말과 함께 실제로는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연기와 연출 방식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혹은 피의자라는 역할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임시배역들이 주는 감정이입 효과에 비해, 고정 배우들의 이미지는 옳고 그름이라는 법적 의미 구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검사역을 맡은 배우는 젊고 냉철한 이미지로, 변호사역을 맡은 배우는 중년의 차분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상황이 많았다. 방송 초기에 배우 선우재덕이 검사로 나왔을 때, 극의 분위기는 검사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을 보면, 이 시기 방송분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방송 후반기에 조금 더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의 배우(정욱)가 검사로 등장했을 때에는, 그에 대비되는 차분한 이미지의 변호사의 판단에 무게가 실렸다. 에피소드에 따라 실제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인터뷰 화면이 삽입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더욱 변호사측의 의견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법조인의 이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의 축이 기우는 것은 배우의 연기 탓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묘사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에서 검사 역을 맡았던 배우 신은정은 이후 두 편의 다른 드라마에서도 연이어 변호사역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배우의 법조인 이미지가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대립과 갈등

인물 묘사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법이 대립관계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대립관계에서는 정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편의 입장에서 다른 편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명백하게 제시되는 대립관계는, 법이라는 전문영역을 쉽고 매력적인 소재로 만들기 위한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소쉬르 이후 기호학에서 이항대립은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용한 틀로 자주 이용된다. 자의적인 기호나 언어 등이 대립에 의해서 보다 명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항대립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법적 갈등이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는지를 살펴보면, 법을 둘러싼 의미와 관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실화극장—죄와 벌>의 대립관계는 크게 '사실적 대립관계'와 '법률적 대립관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적 대립관계는 극중 인물들 사이에 생겨나는 대립관계를 의미하며, 법률적 대립관계란 다루어진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로 상반되는 법적 해석을 의미한다. 사실적 대립관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피해자 대 가해자'의 관계이다. 그 뒤를 이어 검사 대 변호사(23-24회, 26회, 53-54회, 75-76회), 남자 대 여자(27회, 42-43회, 49-50회, 69-70회), 며느리 대 시어머니(27회), 경제권자 대 경제적 약자(39회, 49-50회), 마을사람 대 외지인(42-43회), 장애인 대 비장애인(49-50회) 등의 관계도 대립적으로 묘사된다. 특이할만한 점은 법조인으로 상징되는 법체제와 보통 시민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대립 구조다. 피해자 대 형사(19회), 피해자 대 국가(22-23회), 피의자 대 형사(45-46회, 61-62회), 변호사 대 변호사(12회) 등, 사건 내부의 대립관계보다는 법집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주요 축으로 재현한 경우도 많았다. 이는 앞의 주제 분석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외연적 주제와 내포적 주제가 공존함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다.

한편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대립관계로 묘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법률적 대립관계의 예를 들자면, 자백의 적법성 대 강압적 수사(19회, 45-46회), 우발적 범행 대 계획적 범행(27회, 35회), 허위자백 대 증거(32회), 직접증거 대 간접증거(34회, 53-54회), 명예훼손 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36회), 부권 대 모권(39회, 49-50회), 강간죄 대 무고죄(42-43회), 무고 대 위증(57-58회, 61-62회, 75-76회) 살인 대 살인교사(47회, 48회, 69-70회), 산모의 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12회) 등이다. 이렇게 법적 쟁점의 대립관계를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이 프로그램과 다른 법정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화극장—죄와 벌>은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감정에 따른 대립구조보다는 법적인 쟁점에 대한 문제가 더 우선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대립구조는 때로 시청자들이 법에 대해 가진 불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의 권력을 무소불위의 것으로 재현하는 효과를 지닌다. '마지막 집회—원주 OO교 방화살해사건'(27회)은 아내의 종교집회 참석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교회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유사 종교집회의 문제,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 문제, 고부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대립관계가 등장했지만, 결국 논의는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의 법적 판결 문제로 귀결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보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전적으로 우선시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적인 대립관계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법체계와 법집행의 권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4) 구성과 표현상의 특징

전반적으로 <실화극장－죄와 벌>은 픽션과 논픽션의 기법을 혼용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다만 상황은 설정이라도 인물의 리얼함을 강조하는 일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비해, 이 프로그램은 반대의 방식을 추구한다. 인물(배우)은 설정이라도 그 상황은 리얼한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정의 이미지와 재판 진행과정은 상당 부분 실제와 비슷하지만, 법조인의 직업세계는 미디어의 관습에 따라 정형화된 표현이 많았다.[8] 이러한 인물의 허구적 성격에 현실성을 입혀주는 것은 또 다른 장르적 관습이다. 실제 법조인이나 피해자 가족과의 인터뷰를 삽입하거나 시대를 나타내는 자료(뉴스화면 등)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9시간의 공포－탈주범 지강헌 인질극 사건'(22회)은 1988년 당시 인질극을 중계하던 실제 방송화면으로 시작한다. 또한 인질극의 후유증으로 인해 억대 재산가에서 경비원으로 변신해야 했던 실제 피해자의 모습을 인터뷰하면서, 현재 60대 노인인 그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뒤따라가 보여주는 등 현실성을 의식한 구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프로그램 전반에 깔리는 내레이션은 중요한 판결 내용이나 법적 논쟁점들은 요약 정리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극의 전반적 분위기를 이끈다. 특히 한 사건이 2회에 걸쳐 방송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스터리적인 기법이 훨씬 더 강해졌고, 이에 따라 내레이션의 어투 역시 "~하는데……" 등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며 긴장감을 주려는 의도가 더 강해졌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와 같은 유형화된 내레이션이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살해 장면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거나(61-62회), <CSI>와 비슷한 분할 구성 방식을 채택(53-54회)하는 것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방송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드라마적인 구성이 더욱 강해져서, 법적 언급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결말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 '나도 당당한 엄마이고 싶어요－면접교섭권 및 위자료 청구소송'(49-50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장애인이었지만 한 사람의 엄마로서, 그녀가 떠나고 2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감성에 호소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 '꿈속의 살인－OO동 유아 연쇄살인사건'(65-66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모호한 미소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미스터리극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했다. 물론 극의 진행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잘못 알려진 법적 상식을 바로잡는 등 교육적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극적 재미가 강화될수록 이러한 법적 정보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에피소드마다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정보 형식으로 담겨있었지만,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9]

---

8) 물론 세부적인 묘사에서도 실제 법적 과정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가처분 법원 1심법원의 판사가 1인이 아니라 3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고(17회), 민사소송인데도 형사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36회).

9) 비중 있게 다루어진 법적 쟁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어린아이의 증언의 효력(7회), 접근 금지 명령(17회), 정신적 손해배상의 최대보상액(22-23회), 존속살인죄와 살인죄의 차이(25회), 정황증거의 개념(34회), 상상적 경합(19회), 심신상실 및 미약(27회), 자백의 효력(32회),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34회), 강간죄와 강제추행죄(42-43회), 거짓말탐지기의 효력(45-46회), 예비적 공소(53-54회), 책임무능력(65-66회), 살인교사와 살인방조(65-66회) 등.

5. <실화극장－죄와 벌>의 의미 구성

1) 이항대립 관계에 의한 현실 인식

<실화극장－죄와 벌>은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 과정의 타당성이나 사회 정의의 문제를 암시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 쟁점에 대한 법조인들의 논쟁은 배우들의 연기나 영상 표현에 따라 판단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성 방식을 보였다. 특히 법집행 과정은 이항대립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중립적 선택이 불가능한데, 이 때 현실적 정보의 요소보다는 허구적 드라마의 요소에 따라 법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부르디외(Bourdieu, 1991)가 주장한 것처럼, 정치나 법 등 공공 담론은 기본적으로 이항대립의 차이에 의해 작용하는 체계이다. 모든 종류의 이항대립이 그러하듯, 옳고 그름, 진보와 보수, 안정과 변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등 정치에서 파생되는 이항대립도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불륜, 사기, 권리, 의무, 치사 등의 법적 개념 역시 그 역사적 맥락에 따라 또한 어느 개념과 이항대립에 놓이는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화극장－죄와 벌>은 이러한 이항대립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와 법이미지를 논리적 근거로 한 번 승인하고 감성적 소구로 한 번 더 강화한다. 논증과 반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법절차는 극의 구성 과정에서 대부분 생략되고, 그나마 논리적 과정이 진행될 때도 현실적 법에 의거하기보다는 드라마의 다른 요소(배우, 앵글, 내레이션 등)들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 나와 타자의 대결, 이기는 편과 지는 편, 법의 보호를 받는 편과 그렇지 못한 편의 대립구조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립구조가 법의 쟁점 자체보다는 텔레비전의 본질인 시각적 동일시와 오락적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실제 사건의 현실성 못지않게 미디어 재현상의 '그럴듯함'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이 미디어 재현을 근거로 오히려 실제 법적 판결이나 법조인 집단을 비판하게 되기도 한다.

2) 'CSI 효과'의 한국적 변형

범죄물이나 법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두 갈래로 나뉜다. 범죄 예방과 범죄에 대한 각성의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범죄 수법을 사실적이며 선정적으로 묘사해 모방범죄를 유발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방향은 다르지만 이 두 경우 모두 범죄 프로그램을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영역, 즉 현실학습효과의 차원에서 파악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영화나 TV를 통해 묘사되는 범죄의 이미지가 새롭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심지어는 뉴스에서도 범죄의 모습이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연의 형식을 빌린 리얼리티 프로그램만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CSI 효과'가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인식하지 못했을 수많은 범죄나 사건들이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이는 사건 묘사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실화극장－죄와 벌>이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스터리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0대 여성 살인' 등으로 피해자를 단순화하여 명시한 경우나 '집단 살인 사건'

등 제목 자체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현실에서도 비슷한 대상에 대한 막연한 평가를 내리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 해도 이것이 CSI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CSI 효과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프로그램의 시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기준을 갖게 되거나 법의 공적 권위를 인정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화극장—죄와 벌>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 사회 속의 법의 역할과 그 이미지(신뢰와 불신을 모두 포함한)를 구성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실화극장—죄와 벌>은 실제 사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건들을 주요 소재로 삼아왔다. 여기서 제작진은 과거의 사건들을 불러내어 사실을 밝히려 하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재판 결과나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도 두지 않으려 한다.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혹을 제기하되 결론을 유도하지 않고, 개인의 억울함이 남아있는 사건의 당사자들을 위한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도는 카메라의 시선이나 편집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마치 <라쇼몽>이나 <오! 수정> 등의 영화가 그렇듯이 하나의 일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주장을 번갈아 재현해주는 것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성우의 내레이션도 이러한 판단의 거리를 유지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실화에 기초하고 있는 <실화극장—죄와 벌>은 하나같이 미묘하고 선정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실제 재판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사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극장'일 뿐이며, 있었던 사실을 재연할 뿐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저 다시 한 번 "진실은 무엇일까"를 시청자에게 상기시켜줄 뿐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관습에 익숙한 시청자들이라면, 특정 사건이 소재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현실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 이면에는 무엇인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프로그램의 구성이 그러하고, 실제 게시판 등에서 살펴본 시청자들도 판결 결과와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3) 법 앞에서 미약한 개인

<실화극장—죄와 벌>이 현실의 법체계에 대해 던지는 모호한 시선은 비판과 호평 모두를 이끌어내며 이 프로그램이 일종의 마니아 프로그램이 되었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화극장—죄와 벌>은 막연히 재미로 보기에는 너무 어둡고 무거운 사건들이지만, 그렇다고 사회 정의와 법질서 구축을 외치며 보기에는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 허무할 수밖에 없다. <CSI>와 같은 미국 드라마들은 잔인한 사실 묘사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는데, 아무리 끔찍한 범죄나 사건이라도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있으면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힘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법과 정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당위적 의미가 구성된다. 반면 <실화극장—죄와 벌>은 그러한 법집행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에 빠지거나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며, 결론 역시 실제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모호함으로 끝을 맺는다. 따라서 현실의 법체계만으로는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법과 정의를 지키는 것은 법체계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불편하고도 힘든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법이 과연 인간의 진실을 어디까지 판가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기획의도로 내세우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나 큰 힘에 대항해서 온힘을 다하여 싸우는 미약한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법정 분투기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지점 끝에는, 약자의 편이 되어주기를 거부하고 형평성을 잃은 법 체제와 법 집행에 대한 우리 모두의 불만과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러한 피해의식을 부분적으로 해결하지만, 그 결론이 너무나 극적일 경우 판타지의 세계로 접어들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판결을 뒤집지는 않을 범위 내에서 극을 마무리하면서도, 간간히 실제 변호사나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삽입함으로써 법과 사회에 맞서 싸우는 개인의 목소리를 담으려 한다.

6. 맺음말

TV는 어떤 매체보다도 더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민으로서의 수용자를 교육하고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나 법관, 비밀요원 등과 마주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CSI>나 <실화극장—죄와 벌>을 통해 범법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가상의 교육을 받는다. 만일 이혼이나 자동차 사고 등 크고 작은 법률적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TV를 통해 배운다. 미란다법이 무엇인지, 설사 범법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경찰이 내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든지, 제 아무리 그럴듯한 증거라도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든지 하는 일들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화극장—죄와 벌>을 통해 배우고 간접경험하고, 법의 부당성이나 비현실적인 집행에 대해 울분을 토할 뿐이다. 법률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은 아주 고단하고 지루한 일이지만, 그래도 말을 험하게 해대는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고 편견 덩어리인 법관들을 견뎌내야만 그 과정이 마침내 나에게 덜 불리한 방향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도 안다. 무엇보다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을 것임을 배운다. 원한다면 법적 보호 바깥에서 사는 일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깡패,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의 딱지가 붙게 된다는 사실도 안다. 리얼리티 형식의 법정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져 주면서 속삭인다. 대우받는 시민으로 살려면 법체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우리는 법률적 주체로 형성된다.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는 의식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자연스레 치러내듯, 개인의 갈등과 대립에도 국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이라는 권력 체계는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스며든다. 개인의 이야기는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순간 이미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닌 집단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이자 현실이 된다.

실제 집행기구로서의 법이 국가권력 기관이라면,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은 상징권력이다. 이러한 상징권력은 일상 속에서 법률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법의 집행과 작동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실제 공권력보다 더 큰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법을 재현하는 텔레비전이라는 상징체계이다. 영상으로 표현되고 재구성되는 법이미지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스스로를 훈육하게 한다. 법전문가나 법조인들이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면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시민 교육 도구로서의 텔레비전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역할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텔레비전의 법정 드라마나 범죄물들이

단순한 법집행 묘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법의식과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화극장—죄와 벌>의 분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의 구성이다. 이 프로그램의 의미구성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법은 누구의 편인지, 정의와 진실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누가 중재하는지, 옳고 그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의식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법을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현실과의 관련성을 일깨우는 연출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로 하여금 실제 현실과 유사함을 찾아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법체제와 미디어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에 따라 이러한 의미 구성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법정 드라마나 경찰 드라마가 사회적인 불안 심리를 봉합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국가적인 법체계와 경찰의 신화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정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접하는 법률적 사안을 다루면서 개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조정하는 법의 역할에 더 초점을 둔다. 비록 사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 법정 드라마는 불안한 사건을 제시하고 법이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 규범과 법체계 유지라는 의미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실화극장—죄와 벌>을 통해 구성되는 법체계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미디어와 법이 독립적인 기구나 별도의 텍스트가 아니라 상호관계를 지닌 일상 속의 시스템임을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미디어에 재현된 법이 실제 법체계에 대한 수용자의 의미구성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미디어가 법체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권위를 강화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적 구체성을 더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 영상언어를 더 분석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점 등은 연구의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는다. 비록 개별 사례를 다룬 이 연구에서는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미디어의 힘은 사회 내의 개인에게 소속감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미디어 시민권 논의와도 관련이 된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법과 미디어, 과학과 미디어,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미디어 시민권의 논의도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김수정 (2008). 영어교육열풍에 대한 텔레비전 담론: 시사 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한국방송학보』 22권 5호, 7~52.

민병현 (2009). TV 시사프로그램의 의미구조분석 연구: '버지니아 사건' 주제 <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싶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권 1호, 78~120.

이경숙 (2006).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 <러브人 아시아>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239~276.

이종수 (2004). 『TV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뉴스, 리얼리티 쇼의 현실 구성』. 서울: 한나래.

최현주 (2006).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서사구조 비교분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KBS의 <환경스페셜>과 <추적60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권 2호, 415~441.

홍지아 (2009).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서사전략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 <우리 결혼했어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권 1호, 567~608.

Allen, R. (1987). *Channels of Discourse Reassembled: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김훈순 옮김 (1992).『텔레비전과 현대비평』. 나남.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Harvard University Press.

Carlson, J. M. (1985). *Prime Time Law Enforcement: Crime Show Viewing and Attitudes Towar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aeger Publishers.

Chatman, S. (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rsity Press.

Cole, S. A. and Dioso-Villa, R. (2007). CSI and its effects: media, juries, and the burden of proof. *New England Law Review, 41(3)*.

Entman, R. (1992). Blacks in the news: television, modern racism and cultural change. *Journalism Quarterly, 69(2)*, 341～361.

Eschholz, S., Mallard, M. & Flynn, S. (2004). Images of prime time justice: a content analysis of "NYPD Blue" and "Law & Ord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0(3)*, 161～180.

Friedman, L. (1993).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n History.* Basic Books.

Gerbner, G. (1976). The scary world of TV's heavy viewer, *Psychology Today, April*.

Gies, L. (2006). The media and public understanding of the law. in G. Osborn & S. Greenfield (Eds.) *Readings in Law and Popular Culture* (pp. 65～87). Routledge.

Hughes, T. & Magers, M. (2007). The perceived impact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shows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4(3).*

Manning, P. (1996). Dramaturgy, politics and the axial media ev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37(2)*, 261～278.

Nichols, B. (1991). *Representing Reality: Issues and Concepts in Documentary.* Indiana University Press.

Oliver, M. B. (1994). Portrayals of crime, race, and aggression in "reality-based" police shows: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Spring*, 179～192.

Postman, N. (1985).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s in the Age of Show Business*. Viking.

Rapping, E. (2003). *Law and Justice as Seen on TV*. NYU Press.

Sarat, A. & Kearns, T. R. (1995). *Law in Everyday Lif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chweitzer, N.J. & Saks, M.J. (2007). The CSI effect: popular fiction about forensic science affects public expectations about real forensic science, *Jurimetrics, 47.*

Villez, B. (2009). *Television and Legal System*. Routledge.

Zoonen, L. v. (2005). *Entertaining the Citizen: When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Converge*. Rowman & Littlefiled.

(투고일자: 2010.2.28, 수정일자: 2010.4.11, 게재확정일자: 2010.4.20)

<부록> <실화극장-죄와 벌> 분석 대상

회 차	방 영 일 자	세 부 제 목
7 회	2003. 03. 03	네 살배기 나미에, 그 증언의 진실은?
10 회	2003. 03. 24	세 친구의 진실-교통사고, 누가 운전자인가?
11 회	2003. 03. 31	은밀한 유혹-남성 성희롱의 그늘
12 회	2003. 04. 07	나는 이 아이를 원치 않았다-기형아 출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13 회	2003. 04. 14	나는 죽이지 않았다-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14 회	2003. 04. 21	어느 사형수의 최후항변-인천 일가족 살해사건
15 회	2003. 04. 28	쌍둥이 자매의 사랑과 증오-지나 한 살인음모 사건
16 회	2003. 05. 05	마지막 연극-보험사기의 종말
17 회	2003. 05. 12	예고된 죽음-H양 살해 사건
18 회	2003. 05. 19	얼굴 없는 살인자-67년 김재영(가명)군 살해사건
19 회	2003. 05. 26	안개 속의 살인범-화성 연쇄 살인 사건
20 회	2003. 06. 02	폭로-주병진 강간치상 사건 Ⅰ
21 회	2003. 06. 09	폭로-주병진 강간치상 사건 Ⅱ
22 회	2003. 06. 16	29시간의 공포-탈주범 지강헌 인질극 사건
23 회	2003. 06. 23	패씸죄의 희생양인가, 상습 절도범인가? 1983년 대도 조세형 사건 ①
24 회	2003. 06. 30	패씸죄의 희생양인가, 상습 절도범인가? 1983년 대도 조세형 사건 ②
25 회	2003. 07. 07	위험한 과외-부평 학원장, 존속살해사건
26 회	2003. 07. 14	죽음의 고소장-간통 며느리 고소사건
27 회	2003. 07. 21	마지막 집회-원주 OO교 방화 살해사건
28 회	2003. 07. 28	'메이퀸' 여대생 호텔 살해사건
29 회	2003. 08. 04	벽 속의 여인-Y동 지하실 살인사건
30 회	2003. 08. 18	무서운 '친구'-고교생 교실 살해 사건
31 회	2003. 08. 25	여고생의 진실-특수강도, 성추행 사건
32 회	2003. 09. 01	기막힌 3인조의 진실-X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
33 회	2003. 09. 15	진실게임-100억대 재산가의 살해 암매장 사건
34 회	2003. 09. 22	죽음을 부르는 여인-연쇄 독극물 살인 사건
35 회	2003. 09. 29	여간첩 수지김 그 15년의 진실
36 회	2003. 10. 06	위험한 실험실-**대 *조교 성희롱 사건
37 회	2003. 10. 13	죽음의 포즈-누드모델 살인사건
38 회	2003. 10. 20	나는 짐승을 죽였다-김순정 살인 사건
39 회	2003. 10. 27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양육자 변경 청구소송
40 회	2003. 11. 03	22년간의 살인혐의-81년 <박노파 일가족 살해사건>
41 회	2003. 11. 10	죽음의 동문회-P 대학생 사망 사건
42 회	2003. 11. 17	고동리 스캔들-성폭행 사건의 진실 1부
43 회	2003. 11. 24	고동리 스캔들-성폭행 사건의 진실 2부
44 회	2003. 12. 08	억울한 자백-OO단란주점 살인사건
45 회	2003. 12. 15	어느 살인용의자의 진실 혹은 거짓-81년 여대생 최수연 피살사건 ①
46 회	2003. 12. 22	어느 살인용의자의 진실 혹은 거짓-81년 여대생 최수연 피살사건 ②

47 회	2004. 01. 06	심야의 방문자－OO동 남편 청부살해 사건 ①
48 회	2004. 01. 13	심야의 방문자－OO동 남편 청부살해 사건 ②
49 회	2004. 01. 20	나도 당당한 엄마이고 싶어요－면접교섭권 및 위자료 청구소송 ①
50 회	2004. 01. 27	나도 당당한 엄마이고 싶어요－면접교섭권 및 위자료 청구소송 ②
51 회	2004. 02. 03	거짓말－OO동 여관 살인 사건 ①
52 회	2004. 02. 10	거짓말－OO동 여관 살인 사건 ②
53 회	2004. 02. 17	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00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①
54 회	2004. 02. 24	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00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②
55 회	2004. 03. 02	자살의 법칙－**동 부인 살인 사건 ①
56 회	2004. 03. 09	자살의 법칙－**동 부인 살인 사건 ②
57 회	2004. 03. 16	어느 왕따의 고백－왕따메일 사문서 위조, 재물 손괴 사건 ①
58 회	2004. 03. 23	어느 왕따의 고백－왕따메일 사문서 위조, 재물 손괴 사건 ②
59 회	2004. 03. 30	나는 그를 보았다－**시 연쇄 강도살인 사건 ①
60 회	2004. 04. 06	나는 그를 보았다－**시 연쇄 강도살인 사건 ②
61 회	2004. 04. 13	위험한 관계－OO동 호스티스 살인사건 ①
62 회	2004. 04. 20	위험한 관계－OO동 호스티스 살인사건 ②
63 회	2004. 04. 27	위험한 결혼－** 보험 살인사건 ①
64 회	2004. 05. 04	위험한 결혼－** 보험 살인사건 ②
65 회	2004. 05. 11	꿈속의 살인－00동 유아 연쇄 살인 사건 ①
66 회	2004. 05. 18	꿈속의 살인－00동 유아 연쇄 살인 사건 ②
67 회	2004. 05. 25	남과 여－부적절한 관계의 끝 ①
68 회	2004. 06. 01	남과 여－부적절한 관계의 끝 ②
69 회	2004. 06. 08	예고살인－필리핀 갱단 청부살인사건 ①
70 회	2004. 06. 15	예고살인－필리핀 갱단 청부살인사건 ②
71 회	2004. 06. 22	일본 고베 연쇄 살인 사건 ①
72 회	2004. 06. 29	일본 고베 연쇄 살인 사건 ②
75 회	2004. 07. 19	모르는 여자－인천 강력반장 성폭행 사건 ①
76 회	2004. 07. 26	모르는 여자－인천 강력반장 성폭행 사건 ②
77 회	2004. 08. 09	부활의 왕국－C교 신도살해,사기극의 전말 ①
78 회	2004. 08. 30	부활의 왕국－C교 신도살해,사기극의 전말 ②
79 회	2004. 09. 06	나는 내 딸을 죽이지 않았다 경기 OO시 **호텔 살인사건 ①
80 회	2004. 09. 13	나는 내 딸을 죽이지 않았다 경기 OO시 **호텔 살인사건 ②
87 회	2004. 11. 08	연변 여자－중국교포 절도 사건 ①
88 회	2004. 11. 22	연변 여자－중국교포 절도 사건 ②
90 회	2004. 12. 13	죽음의 그늘－AIDS 복수극 여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①
91 회	2004. 12. 20	죽음의 그늘－AIDS 복수극 여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②

ABSTRACT

Images of Law and Reality in TV Legal Series: Focusing on 〈True Story: Crime and Punishment〉

Hee-Eun Lee*

Can law be combined with television entertainment programs?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law systems and law culture are reflected in and reflect the television legal series. TV legal series, such as legal dramas and infotainment shows, provide platforms for the audiences, who otherwise have few opportunity in real life, to engage with legal systems in societies. Adopting loosely dramatized reality programs, these legal series not only entertain and inform audiences but also educate citizens. This paper combines analyses of theoretical debates on law and television with analysis of TV text. The result shows that <True Story: Crime and Punishment>, dramatized enactment based on true stories and criminal cases, may have an important ideological role in which fictionalized dramas mask the hard realities and authoritative legal systems. By doing so, TV legal shows play their roles not as mere symbolic representation but as powerful institutions that construct the image of law and reality.

Keywords: TV Legal Series, Images of Law, Reality Program, Construction of Reality, CSI Effect, Media and Law

* Assistant Professor Dep.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